

윤리경영 정책

[정책 관리 정보]

제정 일시 : 2025년 12월 1일

주관 부서 : 인사총무Part

결재 승인 : 대표이사(CEO)

1. 개 요

1) 제정 목적

본 정책은 LS머트리얼즈(이하 "회사"라 한다)의 윤리경영에 관한 사항을 정책화 하여 윤리성과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상호 존중과 배려, 신뢰의 행동을 통해 탁월한 성과를 만들며, 외부적으로도 열린 마음을 갖도록 임직원에게 가치판단의 기준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 범위

본 정책은 회사의 전 임직원과 출자법인을 비롯하여 회사와 거래하는 협력사 및 계약 업체에도 본 정책 또는 본 정책과 유사한 수준의 윤리경영을 준수할 것을 권장한다. 또한, 회사는 ISO37001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도입 및 운영함으로써 요구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를 포함하여 적용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2. 기본 원칙

1)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회사는 고객의 의견을 존중하고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가치를 창출하여 신뢰를 확보한다.

① 고객존중

- 고객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고객의 요구는 항상 옳다고 생각한다.
- 고객 만족을 모든 판단 및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② 진실한 정보 제공

- 고객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허위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 고객이 마땅히 알아야 할 사항은 감추지 않는다.
- 경쟁사 제품에 대해 비방하거나 근거 없는 비교는 하지 않는다.

③ 고객에 대한 응대

-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 고객으로부터 A/S 실시 요청, 정당한 교환 요청이나 반품요구가 있는 경우 신속히 응답해야 한다.

④ 고객에 대한 가치 제공

-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품질향상으로 항상 최고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⑤ 고객의 이익 보호

- 고객의 재산을 내 것처럼 보호하고 임의로 사용하지 않는다.
- 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취득한 경우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누설하지 않는다.
- 고객의 이익을 해치는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다.

2) 임직원의 기본 윤리

임직원이 회사의 윤리적 기준을 위반하는 것은 해고 또는 법원에의 제소를 포함하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① 직위·직무를 이용한 부당행위 금지

- 재직 중 직무상 이해관계자로부터 퇴직 후 피고용을 약속 받거나 이를 요구하지 않는다.
- 직무상 이해관계자와 개인적인 사업상 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산 임차·금전 대차 등의 거래를 하지 않는다.
- 상위자는 그 조직 또는 하위자에게 개인적 용무 등을 시키거나 묵시적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② 품위유지

- 회사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비도덕적,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유언비어의 조성·유포 등 조직 내 불신 풍조를 조장하거나 건전한 조직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③ 회사와 이해 상충 행위 회피

- 회사와 이해관계가 상충될 가능성이 있는 외부 업체를 직접 운영 또는 출자하지 않는다.
- 회사와의 사전 협의 없이 담당 직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체 또는 협력업체의 운영에 관여하거나 출자하지 않는다.
- 회사의 경쟁업체 또는 협력업체에 이중으로 고용되거나 회사의 이익과 상충되는 상담·조언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
- 타 회사에 고용되는 경우 회사에 사전 보고 및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④ 직장 내 성희롱 방지

- 임직원은 자신의 언행이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하며,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해 인격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⑤ 금품·향응 등 수수 금지

- 직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향응, 편의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 받거나 요구하지 않는다.
- 부득이하게 금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신고하고 이를 반환한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⑥ 회사 자산 및 정보의 보호

- 회사의 유·무형 자산을 업무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 업무상 취득한 회사 및 고객의 정보와 개인정보를 관련 법규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며, 정당한 권한 없이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

3) 공정한 경쟁

회사는 전 세계의 모든 사업 활동에서 해당 지역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정당한 방법을 통하여 경쟁의 우위를 확보한다.

① 경쟁사 정보의 부당취득 금지

- 부당한 방법으로 경쟁사의 정보나 영업비밀을 취득하지 않는다.
- 정당하게 입수된 경쟁사 정보일지라도 부당하게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② 정당한 경쟁우위 확보

- 경쟁사가 보유한 모든 분야의 유·무형자산을 도용하거나 무단 침해하지 않는다.
- 광고 등을 통해 경쟁사에 대해 비방하지 않는다.

③ 담합 금지

- 경쟁사와 판매가격, 판매 조건 및 지역 배분 등에 대해 담합하지 않는다.
- 동종거래처들과 부당한 협의체 또는 담합기구를 구성하거나 가입하지 않는다.

④ 법규 및 상관습의 존중

- 국내 및 해외에서의 모든 사업 활동은 해당 국가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거래 관습을 존중한다.
- 국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제상거래 뇌물 방지협약과 국내법 국제상거래 뇌물 방지법을 준수한다.

4) 공정한 거래

모든 거래는 평등한 참여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며, 투명한 거래를 통해 상호 신뢰와 협력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공동의 발전을 추구한다.

① 공정한 절차에 의한 거래처 선정

- 공정한 평가 기준에 의해 거래처를 선정, 등록할 수 있도록 거래처 선정 절차에 관한 제반 지침과 제도를 정립하고 실행한다.

② 공정한 거래와 평가

- 공정하게 평가된 거래 결과를 거래처에 통보하고 다음 거래에 반영한다.
- 거래의 개선 및 혁신을 위해 제시된 건전한 의견은 업무에 적절하게 반영한다.
- 거래처의 기술이나 기타자산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거래처의 승인을 얻는다.
- 회사가 명백히 잘못하여 거래처가 피해를 입은 경우는 공정하게 배상한다.

- 공정거래 관련 법규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③ 깨끗한 거래 질서의 유지

- 거래처로부터 금품·용역·향응·기타 편의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거나 요구하지 않는다.
- 거래와 관련하여 혈연·지연·학연 등 특수관계에 의한 청탁이나, 업무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외부 압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 거래 과정에서 알게 된 협력업체의 정보 및 기술을 명시적 사전승인 없이 이용함으로써 협력업체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지 않는다.

④ 협력업체의 지원

- 협력업체의 실질적인 육성을 위해 협력업체 육성 지침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5) 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책임

회사는 모든 임직원을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능력과 업적에 따라 공정하게 대우하며, 임직원의 창의성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노력한다.

① 인재의 육성

- 임직원을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갖추고 이를 지원하며 활성화시킨다.
- 상사는 부하를 도전적이고 강인한 인재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로, 부하의 적성과 소질을 고려하여 필요한 충고와 지도를 아끼지 않는다.

② 능력과 업적에 의한 대우

- 임직원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하며, 학벌, 성별, 연령, 출신 지역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않는다.
- 능력과 업적에 대한 명확한 평가 기준을 정립·공개하고 엄격히 준수함으로써 공정한 경쟁 풍토를 조성한다.

③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

- 임직원의 안전과 보건을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반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행한다.

④ 인권의 존중

- 임직원의 인권을 존중하며, 강제노동과 아동노동 등 비인도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인종, 국적, 성별, 종교, 학벌,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6)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

회사는 합리적인 사업 전개를 통해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함으로써 국민의 풍요로운 삶과 사회발전에 공헌한다.

① 비도덕적·반사회적 기업활동 금지

- 밀수, 부동산 투기 등 국민경제에 해를 끼치는 행위 또는 국민 정서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② 국가·사회발전에 대한 공헌

- 학벌, 성별, 출신 지역별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균등한 고용의 기회를 부여한다.
- 조세를 성실하게 신고하고 납부한다.
- 사회 각계각층과 지역 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며 이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 임직원의 건전한 사회봉사 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권장한다.

③ 주주 이익의 보호

- 주주의 알 권리와 정당한 요구, 제안, 공식적 결정을 존중한다.
- 직무상 취득한 내부 또는 타기업의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의 매매 등을 하지 않는다.

④ 환경의 보호

- 환경보호에 위배되는 사업 활동을 금지하며, 공해 및 오염 방지를 위해 투자를 해야 한다.
- 환경보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환경보호 활동을 전개하며, 환경보호 관련 제반 법규를 준수한다.

7) 윤리경영의 실천

회사는 윤리경영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 조직과 제보 제도를 운영하며, 윤리규범 위반행위를 예방하고 시정한다.

① 윤리경영 추진 조직

- 회사는 윤리경영의 체계적인 추진과 점검을 위하여 전담 조직을 두고 관련 제도를 운영한다.
- 임직원이 윤리적 판단이 어려운 사안에 대하여 상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 위반행위의 제보 및 상담

- 임직원과 협력사·고객 등 이해관계자는 본 정책의 위반행위를 알게 된 경우 회사가 정한 제보 채널을 통해 신고하거나 상담할 수 있다.
- 제보는 실명 또는 익명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제보 내용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

③ 제보자의 보호

- 회사는 제보자의 신원과 제보 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한다.
- 제보를 이유로 제보자에게 어떠한 신분상·인사상의 불이익도 주지 않는다.

3. 윤리경영 추진 체계

회사는 윤리경영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거버넌스와 관리 체계를 운영한다.

(1) 추진 조직 및 거버넌스

- ① 이사회는 윤리경영의 최종 감독 책임을 가지며, 주요 정책과 중대 위반 사항을 보고받는다.
- ② 대표이사(CEO)는 윤리경영 실행의 총괄 책임을 지며, 윤리경영 전담 조직을 둔다.
- ③ 윤리경영 전담 부서는 정책 수립·교육·점검·제보 처리 등 실무를 주관한다.

(2) 윤리경영 시스템 인증 현황

- ① 회사는 ISO37001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도입·운영하여 부패방지 관리체계의 국제 표준을 준수한다.

4. 윤리경영 운영

회사는 국제 윤리·반부패 규범을 준수하며, 다음을 실시한다.

- (1) UN Global Compact, OECD 국제상거래 뇌물방지협약, UN 반부패협약(UNCAC) 등 국제규범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국내 법규를 준수한다.
- (2) 윤리 및 부패방지를 위한 세부 가이드(실천지침)을 제정·운영하고,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윤리·부패방지 교육을 실시한다.
- (3) 매년 윤리경영 추진 목표를 수립하며, 전담 부서는 추진 실적을 이사회 및 대표이사에게 정기 보고한다.

5. 윤리·부패방지 준수 모니터링

회사는 윤리규범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개선에 반영한다.

- (1) 관련 법령 및 ISO37001 요구사항에 기반하여 정기적인 내부 점검·내부감사를 실시한다.
- (2) 임직원 및 협력사를 대상으로 윤리규범 준수 실태를 조사하고, 위반 우려 사항을 사전에 식별·시정한다.
- (3) 윤리교육 이수율, 부패행위 적발·제재 건수 등 주요 지표를 관리하며, 위반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한다.

6. 윤리 이슈 대응

회사는 윤리규범 위반 사항에 대해 공정하고 신속한 대응 체계를 운영한다.

(1) 제보·상담 채널 운영

임직원·협력사·고객 등 이해관계자는 실명 또는 익명으로 제보·상담할 수 있다.

(2) 조사 및 시정

접수된 사안은 신속·공정하게 조사하고, 사실 확인 시 시정 조치 및 관련자 징계를 실시한다.

(3) 제보자 보호

제보자의 신원과 제보 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며, 제보를 이유로 어떠한 신분상·인사상 불이익이나 보복도 가하지 않는다.

(4) 재발 방지

위반 사례를 분석하여 제도·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재발을 방지한다.

7. 부패방지 리스크 평가 (ISO37001 연계)

회사는 부패 리스크를 주기적으로 식별·평가하고 통제한다.

(1) 평가 주기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 1회 정기 평가를 실시하며, 신규 사업·M&A·중대한 사업 변경 시 수시 평가를 추가로 실시한다.

(2) 평가 대상 및 범위

전직원(영업·구매·계약 담당 포함) 부패 취약 업무와 거래처·대리인·이해관계자 거래를 포함한다.

(3) 고위험 영역 관리

평가 결과 식별된 고위험 영역에 대해 통제 활동을 강화하고 점검 주기를 단축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정책은 202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개정) 본 정책의 제정 및 개정은 소관 부서의 검토를 거쳐 시행한다.
3. (소관 부서) 본 정책의 소관 부서는 인사총무Part로 한다.